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104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승 담당변호사 김연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근철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2. 12. 8.

판결 선고2023. 1. 1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3,696,152원, 피고 C는 56,646,2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D으로부터 대전 동구 E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F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위 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들은 부부관계 있는데 D의 채권자이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경위

F은 2018. 8. 27. 원고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인 G 법무법인 G 2018. 8. 27. 증서 2018년 제3847호로 공증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채무) 채무자 A는 2018. 8. 27. 현재 채권자 B, C 등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 280,000,000원을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하기로 채권자 등에게 청약하고, 채권자 등은 이를 인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 및 방법) 다음과 같이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다.

1. 2018. 2. 21. 200,000,000원정, 2. 2019. 8. 21. 80,000,000원정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권자 B(인)

채권자 C(인)

채무자의 대리인 F(인)

연대보증인 H(인)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280,000,000원(피고들 각 14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원고를 채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I, J, K, L, M, N, O은행, P은행, Q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9타채1607호)을 받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280,000,000원 중 일부인 164,836,809원(피고들 각 82,418,401원)을 청구금액으로, 원고를 채무자로, 사회복지법인 R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6. 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9타채7366호)을 받았다.

라. 피고들은 위 다.항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아래 각 제3채무자로부터 아래 각 금원을 추심하였다.

1) 피고 B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 4. 30. 27,463,836원, 2019. 5. 28. 13,160,195원, 합계 40,624,031원

○ N : 2019. 3. 8. 2,783,755원, 2019. 3. 29. 1,443,562원, 2019. 4. 22. 457,810원, 합계 4,685,127원

○ I : 2019. 3. 8. 1,408,610원, 2019. 3. 29. 3,357,533원, 2019. 4. 22. 482,563원, 합계 금 5,248,706원

○ K : 2019. 3. 8. 897,814원, 2019. 3. 29. 2,829,683원, 2019. 4. 22. 937,640원, 합계 4,665,137원

○ J : 2019. 3. 8. 2,673,649원, 2019. 3. 29. 1,687,390원, 2019. 4. 22. 902,724원, 합계 5,263,763원

○ L : 2019. 3. 8. 2,857,164원, 2019. 3. 29. 5,240,944원, 2019. 4. 22. 643,016원, 합계 8,741,124원

○ S : 2019. 3. 29. 1,727,544원, 2019. 4. 22. 418,148원, 합계 2,145,692원

○ T : 2019. 3. 29. 3,501,365원, 2019. 4. 22. 164,167원, 합계 3,665,532원

○ U : 2019. 4. 4. 203,180원

○ 사회복지법인 R(원고의 급여) : 2019. 11. 12. 562,000원, 2019. 12. 22. 562,000원, 합계

1,124,000원

○ 원고의 동산 경매 배당금 등 : 2019. 10. 24. 현금 170,000원, 자기앞수표 금 7,159,860원, 합계 7,329,860원

○ 총 합계 : 83,696,152원

2) 피고 C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 4. 30. 27,463,836원, 2019. 5. 28. 13,160,195원, 합계 40,624,031원

○ I : 2019. 3. 8. 1,408,609원, 2019. 3. 29. 3,357,533원, 합계 4,766,142원

○ K : 2019. 3. 8. 897,814원, 2019. 3. 29. 2,829,683원, 2019. 4. 22. 937,640원, 합계 4,665,137원

○ J : 2019. 3. 8. 2,673,649원, 2019. 3. 29. 1,687,390원, 2019. 4. 22. 902,724원, 합계 5,263,763원

○ U : 2019. 4. 4. 144,990원, 58,200원, 합계 203,190원

○ 사회복지법인 R(원고의 급여) : 2019. 11. 12. 562,000원, 2019. 12. 12. 562,000원, 합계 1,124,000원

○ 총 합계 금 56,646,263원

마. 관련 형사재판 및 민사소송

1) 원고는 2019. 4. 12. F, D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F은 2020. 10. 15.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으로 기소되었고, D은 같은 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후 F은 2021.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542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7. 22.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무권대리인인 F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8.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이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추심한 각 금원(피고 B은 83,696,152원, 피고 C는 56,646,263원)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83,696,152원, 피고 C는 56,646,2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2.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F과 공모하여 허위로 고소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F과 이혼을 하는 중이라고 거짓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F이 형사처벌받은 이후에도 원고와 F은 대전에 있는 V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대리인인 F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추심한 금원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민사판결 및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숙미